

심사보고서

의안명	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안번호	제438호
심사일자	2026. 6. 15.



위원장 신영재 (인)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438
------	-----

2026년 6월 15일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5. 28. 송파구청장
나. 회부일자: 2026. 6. 1.
다. 상정일자: 2026. 6. 15. 제332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2. 제안설명 요지 (이신권 경제진흥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처리, 소멸시효 완성 후 잔액 처리 및 할인보전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할인보전금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6호)

-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근거 마련(안 제4조의2제3항)
- 상품권 소멸시효 및 환불기준 명시, 잔액 처리 규정 등 신설(안 제4조의3)
- 조례 개정 전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(부칙)

다.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

- 「민법」 제184조
- 「상법」 제1조 및 제64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
- 「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서울페이 이용자 약관」 제11조 및 제12조
- 「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 약관」 제8조

○ 예산조치: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음

○ 관련부서 사전협의

-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
- 성별영향평가(여성보육과)
- 규제사전심사(기획예산과)

○ 기 타

- 1) 개정문안, 신·구조문대비표, 관계법규(별첨)
- 2) 입법예고: 2026. 4. 23. ~ 2026. 5. 13.(20일간)
- 3) 비용추계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진미숙)
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-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
의안번호 제43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,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정·시행중인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송파사랑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근거를 마련하고, 상품권 소멸시효에 따른 잔액 처리 규정 등을 신설하며,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에 대한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▶ **안 제2조(정의)제6호**에서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, 서울시 및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‘할인보전금’이라 규정하고,
- ▶ **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2**의 개정사항은 개정안 제2조에서 ‘송파구’에 대한 약칭을 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,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에 대한 오타를 수정하며,
- ▶ **안 제4조의3**에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되,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매 시 납부했던 본인부담금 잔액은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좌의 미등록 또는 해지 등으로 환급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환급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, 할인보전금은 사용자의 본인부담금과 분리하여 정산하고, 재원 부담 비율에 맞춰 국가, 서울시 및 송파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함.

○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송파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(5년) 내 미사용 잔액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환불 절차를 마련하여 송파사랑상품권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, 할인보전금의 세입 조치 근거를 명시하여 공공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, 조례 개정 후 송파

사랑상품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·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림.

4. 질의 및 답변(요지)

【질의】 최상진 위원

-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대한 환급이 되어왔는지?
- 환급금에 대한 우리구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인지?

【답변】 이신권 경제진흥과장

-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, 환급이 되지 않고 있었음. 다만 상품권을 60%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,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않다보니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는 사항임.
-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, 우리구 금고에 낙전으로 보관하고 있어 5년이 지난 후에는 그 낙전금액으로 환급을 추진할 예정으로,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음.

【질의】 최옥주 위원

- 구매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, 구매일 확인하는 방법은?
- 미사용 잔액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?

【답변】 이신권 경제진흥과장

- 판매업체에 구매일자가 확인이 가능함.
- 8억 5천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음.

【질의】 김호재 위원

- 송파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생각하면 전액 환급보다는 일종의 패널티를 줘서 지역내 상품권 사용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지?

【답변】 이신권 경제진흥과장

- 부서에서도 환급보다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, 서울시에서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항임.

【당부말씀】 신영재 위원

- 향후 송파사랑상품권 발생 시, 할인율을 보다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.

5. 심사결과: 원안가결